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임경석(한양대)

본고는 신자유주의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을 짓밟음으로써 인권무용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장에서는 근대 이후 정착한 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의 외연적 확장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에 왜 인권담론의 장악력이 필요한지를 제안한다. 3장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의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인권의 만남이 제공하게 될 상보적인 장점을 살펴본다. 4장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양산한 우리사회의 암울한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5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특성과 그 옹호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적 운동의 실천적 연대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능동적 실현의 일보임을 제안한다.

주제어: 기본소득, 인권, 연대, 생명지분권, 프레카리아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6908)

1. 문제제기

오늘날은 ‘인권담론의 시대’이다. 1948년 인류의 비극적 체험에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흔히 “UN 8대 인권조약”¹⁾의 확장적인 채택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제연합과 지역차원의 기구를 중심으로 인권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만으로는 세분화가 요구되는 인권체제들 내부의 우선순위나 가용자원 혹은 문화조건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인권실현의 지역적·국가적인 편차나 기대치의 차이를 감출 수는 없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위상과 그와 연관된 규범적 가치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²⁾ 그 주된 이유로는 인권의 준수 여부가 지구촌에서 한 국가의 선진성의 평가나 좋은 삶을 측정하는 척도들 가운데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세계의 모습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오히려 짓밟히는 반인권적 경우들을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들이나 여타 인권조약들과 굳이 대조해 보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구촌의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은 국제연합이 2015년까지 급박한 인권침해의 원인제거를 목표로 제안했던 ‘새천년

1) 여기에 해당하는 조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채형복, 『국제인권법』, 27-28쪽.

2) 오늘날 인권과 관련된 국제 규약은 가입국들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도 보편적 인권의 준수 여부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될 수 있다. “1) 국제연합 현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제55조 및 제56조). 2)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인권법의 상당한 내용은 이미 국제관습법을 허용하고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1503결의를 통해 일관된 패턴의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해 개인정원을 허용하고 있다. 4) 인권 중의 절대적인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법의 일반원칙이고 강행법규이다.” 박찬운, 『인권법』, 54쪽.

발전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공허한 메아리로도 확인할 수 있다.³⁾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등장했던 “글로벌 극빈상태의 근절”⁴⁾,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력지원, 보편적 초등 의무교육의 실시, 모자보건의 개선,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퇴치 문제 등은 여전히 상존한다. 무엇보다도 부유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 참여 대신 특정 지역이나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조장 혹은 전가하고 있다. 특히 인권과 인간 존엄성이 가장 비참하게 침해받는 전쟁과 내란 혹은 테러의 극한 상황 중에 국제 인권법은 무력하기조차 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국면들 때문에 인권 그 자체의 한계나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태도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대응방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규범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의 질서를 규제하는 척도로서 순기능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담론의 대전환은 인권을 지구인 모두가 권리로 향유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에 어떤 적극적 권리를 의무로 부과할 것이며,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규범의 수용과 실행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

3) 이런 맥락에서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정치 집단에 속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근대의 ‘시민권’과 궁극적인 ‘인권’의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면서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예외 권리인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승인하는 것은 단순한 편견이고 위선이며 새로운 세계의 잔인한 위엄 앞에서 겁먹은 행동이라는 전체주의 운동의 냉소적인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바로 점점 더 많은 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구절은 희생자, 박해자, 방관자들 같은 당사자들에게 절망적인 이상주의나 어설피고 의지박약한 위선의 증거가 되었다.” 한나 아렌트/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493쪽.

4) 장 지글러/유영미 옮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173쪽.

다. 오늘날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수수방관은 역설적으로 최근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이주자의 물결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⁵⁾ 더구나 최근 ‘IS의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부 선진국들의 반인권적 현장에 대한 국익 우선의 태도는 무고한 한 지역 민간인의 인명살상의 용인뿐 아니라 테러로 자행되는 생명과 소중한 공유자원인 생태계와 문화재들마저 파괴하는 야만적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신자유주의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출발점인 다수의 “생명 지분권(right to life-share)”⁶⁾을 짓밟음으로써 인권무용론을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근대 이후 쟁취한 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의 외연적 확장과정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3장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인 생명지분권의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basic income)”⁷⁾과 인권의 만남이 제공하게 될 상보적인 장점을

5) 글로벌 사회는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며 반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및 금융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무거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빈국의 부채탕감이나 개도국의 외채소멸,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0.7%를 해외원조에 제공하겠다는 지구촌의 균형 있는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UN회원국들은 아울러 현재 10억 이상의 극심한 빈곤과 결핍상태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해방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여하한 문제해결의 실천적 움직임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주자 문제나 일자리문제는 심각한 지구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이 지구촌의 상생을 목표로 제시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주요 업무목록들은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를 참조할 것.

6) 본고에서 말하는 인권의 출발점으로 누구나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들에 대한 법적 권리들과 더불어 누구나 비교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도록 상호 의무로 요구할 보편타당한 도덕적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에서 ‘생명지분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7) 기본소득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과 같은 복지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병행해서 실시되는 것이며, 이 소득은 통상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의 부과 무관하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지급받는 소득”이며 ‘무

주목해보겠다.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면, 이것은 인권 침해를 몸소 겪고 있고 겪을 수밖에 없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절대적 빈곤에 빠질 위험을 개선내지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정치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4장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양산한 우리사회의 암울한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5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특징, 장점, 그리고 쟁점들을 간략히 논해보겠다. 끝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적 운동의 실천적 연대가 왜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안해 보겠다.

2.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의미⁸⁾

인권의 역사적 발전은 그리스의 자연법사상과 로마 시대 키케로의 만민법 및 스토아학파의 코스모폴리티즘을 경유하여 이후 중세의 교부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⁹⁾ 만인에게 적용되는 자연법사상의 발전은 근대 초기 자연권을 거쳐 미국의 ‘독립선언서(1766)’와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의 탄생을 통해 정치적 권리로 선포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인권담론의 역사는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체험을 배경으로 ‘국제연맹(1920)’, ‘국제연합(1945)’의 창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1948)’에 연이은 각종 인권조약의 체결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3세대 혹은 4세대의 발전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¹⁰⁾

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3가지 특성을 지닌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Basic Income for All!』, 1-2쪽.

8) 임경석, “인권 실현의 토대로서의 글로벌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 99-108쪽.

9) 최현, 『인권』, 24-31쪽.

10) 근대 이후 출현한 인권 내용과 그 변천과정의 이해에 있어서 프랑스의 법학자 바사

특히 근대 이후 서구의 인권은 이전의 인권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보완적 성격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선 제1세대 인권담론은 18세기 계몽주의가 마련한 근대적 인간관의 형성 이래로 투표권, 언론·출판·집회·종교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권, 생명권, 재산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바이마르 헌법체제(1919-1933)’와 ‘대서양 헌장(1941)’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적극 개입보다는 ‘인도주의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 내부의 소극적 자율성의 보호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1세대 인권담론은 넓은 의미에서 남성 중심적이며 부르주아적 인권의 보호란 측면에서 비인권적 처지에 내몰린 여성, 아동, 장애인, 극빈자, 원주민, 소수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성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별적 인권으로 비판될 수 있다.¹¹⁾

이후 제2세대 인권담론은 양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법을 주도했던 민족자결주의를 넘어서며 신생국과 개도국의 권익을 수용하는 가운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2세대 인권담론은 전통적인 정치적 자유의 지평을 확장하는 가운데 노동, 사회보장, 휴식과 휴가, 주거, 교육 및 안정된 삶의 표준들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의 평등적 확장에 기여했다. 특히 마셜(T. H. Marshall)은 형식적이고 법적인 평등만으로는 시장의 힘에 압도될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정’과 연관된 사회권의 강조 및 페미니즘의 수용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복지권을 포함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무

(K. Vasak)이 제시한 인권의 3세대론 모델은 인권담론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단순화한 한계를 지닌다. 인권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84쪽. 그밖에 인권의 역사모델의 분류는 박찬운, 『인권법』, 39-41쪽; 채형복, 『국제인권법』, 18-20쪽; 안옥선, 『불교와 인권』, 23쪽을 참조할 것.

11) 최현, 『인권』, 67-82쪽.

를 요구하면서 적극적 인권신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시민주의적인 전통은 실직이나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귀속시키려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반박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개인을 사회적 복지수혜의 수동적 존재로 만들면서 그 개인의 잠재적인 창의력과 자율성을 억제하며 국민국가의 물리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다.

오늘날 진행 중인 “3세대/4세대 인권담론”¹²⁾은 반식민주의의 조류가 확장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1990년대 “제3의 길”¹³⁾의 모색 이래로 전통적인 정치권력, 언론, 세속적 NGO들이 상호개입하면서 지구적 연대성에 기초해서 전쟁, 기아, 굶주림, 대학살, 일자리, 여성운동, 소수자, 공정무역, 정보공유,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와 더불어 인간 종에 대한 종차별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 존재’로 개방된 ‘생태권(ecological rights)’의 보존과 안녕 등으로 그 의미 영역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연대와 결속의 가능성을 모색 중에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인권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2) 본고는 3세대와 4세대 인권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3세대 인권담론이 인간중심적인 종차별주의적인 이기주의의 한계점을 지닌다고 지적하면서 4세대 인권담론의 이름으로 소위 인권내용을 보다 넓은 ‘온 존재’의 생태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본고에서 따로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아 3/4세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론』이 주목하는 동물권(animal right)이나 안옥선, 『불교와 인권』, 333-334쪽을 참조할 것.

13) 이러한 방안의 창안자들은 진정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지만, 그 개입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을 벗어나 ‘촉진적(facilitative) 혹은 능력부여(enabling) 국가’ 혹은 ‘자력화의 정치(politics of empowerment)’의 증진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3의 길’은 이미 새로 워진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의 틀인 동시에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다. 앤서니 기든스/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38-68쪽.

	제1세대 (18-19세기)	제2세대 (20세기)	제3/4세대 (20세기 후반)
권리의 내용	자유	평등	인류에 및 연대
권리의 성격	시민권과 소극적 자결권(자유권과 참정권)	경제적·사회적·문 화적 권리(사회권)	전 지구적·연대적 권리
권리의 기원	자유주의	코뮰주의, 사회(민주)주의	진보경제학, 생태주의, 개발학, 녹색이념,
권리의 특징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보호 소극적 권리 (~으로부터의 자유권)	개인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중재를 필요 적극적 권리 (~에로의 자유권)	집단, 국가 그리고 지역 간 글로벌 연대의 종합적 권리가 필요
적용되는 예들	선거·집회·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공정한 재판과 고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권리 등.	노동권, 사회보장권, 가정보호권, 의식주에 관한 권리, 의료권, 교육받을 권리,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 문화와 과학발전에 대한 권리 등	(개발)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 공동유산의 공유권, 향유권, 다를 수 있는 권리, 인도적 구원요청의 권리, 범세계적 교신권 등

이러한 발전과정을 이룩한 인권 개념은 그런데 종종 서구의 인권선진국들에서만 완결되고 고정되어 주어진 서구중심주의나 패권주의라는 이름 아래 보편주의를 가장한 특수주의란 비판에 자주 직면하곤 한다.¹⁴⁾ 실제로 서구적 인권개념에 대한 비판적 냉소주의는 인종차별

14) 갈통(J. Galtung)은 대표적으로 서구식 인권개념의 문제점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으로 “1. 인권이 서구의 전통과 사상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2.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낙관론과 진보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3. 개인주의적이며 단일한 서구식 인권규준이 적용되고 있고, 4. 인간중심적이며 동물과 자연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며, 5. 서구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유화된 인간을 강조하며, 6. 승자와 패자를 규정하는 경쟁시스템의 사회관이 지배적이며, 7. 초개인적이고 초월적인 국가 지배의 개념적 구성이란 속성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조. J. Galtung, *Human Rights in Another Key*, 13-17쪽. 아울러 최근 인권외교의 한계로 종종 “1. 인권은 예를 들어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사태 등 무력 개입을 위한 비열한 정당화일 뿐이

을 방조하는 미국식 인권에 대항하는 “아시아적 가치의 인권 개념”¹⁵⁾을 주장할 뿐 아니라 공동체주의담론과 지역주의, 배타적인 문화제국주의, 발전단계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도 보편적 인권이념은 논쟁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목록들 가운데 노예제도처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 권리도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처럼 대다수의 권리들은 잠재적 보편성만을 지닌다. 아울러 인권의 보편적 적절성의 판단 여부는 국가별, 지역별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 간의 다차원적 중요성을 유념해야 하는 제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이념”¹⁶⁾이 그 정당성의 합당한 기준을 모색하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인류의 공통 유산으로서 수용될 수 있었던 “규범적 장악력”¹⁷⁾의 맥락을 결코 간과

며, 2. 서구의 인권 외교는 위장된 해게모니 쟁탈전으로, 예를 들면 서구적 가치의 강요와 특히 경제적 패권을 위한 인권 기준의 남용으로 ‘아시아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며, 3. 인권의외정책이 자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지를 살피기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실태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의 경우처럼 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다른 나라들의 관행을 바꾸는 데에만 관심을 갖으며, 4. 각국 정부가 모든 지역에서 모든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공평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구화의 수단으로 비판받고 있다. 앤드류 클레팸/박용현 옮김, 『인권은 정치적이다; 쟁점으로 보는 인권교과서』, 96-113쪽.

15) (신)유교중심의 아시아적 가치론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인권담론의 목소리 확장이란 입장에서 바람직한 문화들간의 대화를 열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1. 아시아적 가치론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서구전통의 장점과 단점을 온당하게 부각시키는 대신 개인주의적 자유권과 소유자본주의와 같은 부정적 현상만을 대척점으로 제시하는 방법적 편의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2. 아시아적 가치론 자체의 정의가 지니는 불명료함, 3. 그 고유한 도덕적 특성에 대한 강조로 인해 폐쇄적인 전통관을 고집하는 문화의 정치화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임흥빈,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가치론』, 88-93쪽.

16)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논쟁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59-60. 64-65쪽. M. C. Nussbaum, "Commentary on Onora O'Neill: justice, gender, and international boundaries", 324-335쪽.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김비환 외,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493-497쪽.

17) 역사적으로 인권의 ‘규범적 장악력’은 적어도 제1세대부터 제3/4세대에 걸친 인권항목의 발전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과 적극적인 도덕적 동의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이념의 역사는 대체로 인류의 비극적 체험의 산물이자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숭고한 희생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¹⁸⁾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고 보장받기 위한 인류의 반성적 공통 감각(sensus communis)에서 탄생한 보편적 인권이념은 항구적 인정투쟁의 ‘소프트 파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대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노예제, 인종차별, 성차별, 대량학살, 고문 등과 같은 현실정치의 반인권적 억압들에 대항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보편적 인권이념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르완다(Rwanda)나 1998-1999년 코소보(Kosovo)사태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인종학살의 참극을 서구의 인권선진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수방관적 태도로 일관한 사례들에 대한 적절한 지적은 결과적으로 인권이념의 부정이나 거부의 태도에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원칙에 따른 비판적 교정노력의 결실임을 명심하자. 이처럼 보편적 인권은 반인권적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여 인권상황을 개선하거나, 심지어 정권교체를 이끌어 낼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적어도 이러한 인권담론의 역할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인권은 더 이상 약자들의 호소 차원에서만 지지되는 유약함을 넘어서서 그 원칙을

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개념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공통관념에 근거해서 현존하는 반인권적인 위협이나 인간 존엄성의 역량을 제한하려는 경험적 조건들을 비판하고 어떤 중대한 변혁을 촉발시켰는지에 대한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방지, 아동권리, 국제이주자, 장애인, 난민, 국제형법재판소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주목이 요구된다.

18) 토마스 페인(T. Paine)의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나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 Wollstonecraft)의 『여권의 옹호The Vindication for the Rights of Women』에서처럼 인간의 권리나 여성의 권리가 억압되고 부분적으로 망각되었던 시기에 다가올 인권의 규범적 정당성을 옹호했던 선구자들의 열정적 관심과 그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롤즈(J. Rawls)는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인권의 국제법적 규범예로의 점진적 변용의 노력에서 인류의 보편적 유산으로서 인권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파괴하려는 무리들의 여하한 시도들을 격파하는 강력함의 원칙일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원칙을 수립하려는 인류의 열망을 부분적 탄압사례들 때문에 부정하려는 행위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음도 명심하자.

3. 인권과 기본소득의 만남

오늘날 인권목록의 권리 내용들은 자유권, 시민권,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 환경권, 보상권, “개발권”¹⁹⁾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풍성하다. 세계인권선언의 22조 27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실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공정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며 유급 휴일을 배정 받을 권리, 의식주와 의료혜택을 제공 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예술을 감상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에 따르는 혜택에 동참할 권리를 갖는다.”²⁰⁾ 다만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권이 힘없는 다수의 도덕적 호소력이란 약자의 외침으로 머물지 않고 최소한 평등한 권리에 기반을 둔 해방과 연대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생존노

19) 개발권(Right to Development)은 세네갈의 고등판사 케바 음바에(Keba M Bayer)가 1972년 한 공개강좌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개발권, 즉 ‘더 잘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이 주장이 개발권의 시초이다. 애초에 개발권은 개인의 인권으로 제안되었으나, 이후 빈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국이 도와주어야 할 의무라는 뜻처럼 집단적 인권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1986년 UN총회에서 「개발권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이 채택됨으로써 경제성장을 넘어선 개발과정에서의 인간의 권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도 도입되기 시작했고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인권회의’에서 개발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참고. 이준 센굽타, 『개발권의 정의와 실천』, 54-86쪽. 마이클 프리먼/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 203-205쪽.

20) 참고. <http://www.un.org/en/documents/udhr>.

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시간과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구촌의 절박한 인권문제는 법적 절차로만 해결될 수 있기 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인권담론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율성, 자원의 규모,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용인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최소목록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서 커다란 불일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그리핀(James Griffin)은 인간이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타인이나 무언가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2) 선택이 실현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과 정보를 갖고, 선택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과 능력을 갖으며, 3)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타인을 강제로 가로막지 않는 상태인 행동의 자유”²¹⁾를 누릴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리핀은 그 최소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슈(Henry Shue)는 “그것이 우선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그 밖의 권리들도 행사될 수 없는 그와 같은 권리”²²⁾를 ‘기본적 권리’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바로 현재 불리한 삶의 조건에 있는 시민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공적 삶에 참여하도록 변모시킬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의 최소 조건의 충족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가계, 집단, 국민의 단위가 아니라 모든 개별 시민에게 어떤 수급 자격이나 요구조건 없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액수의 현금이나 현물을 매월 주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사회안전망의 명칭이다. 이

21) James Griffin, *On human rights*, 33쪽.

22) Henry Shue,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 S. Foreign Policy*, 19-20쪽. 31쪽.

것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자신의 발전과 가족 구성원, 타인 및 외부 세계와의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적 욕구에 부합하도록 하며 최저생활의 보장을 추구한다. 더불어 기본소득은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이나 사회봉사 등의 추가 조건을 달지 않고 주어지는 일종의 종자돈이다. 이 소득은 시민권이란 조건을 제외한다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빈곤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주목하는 최소보장소득과 달리 가난한 시민뿐 아니라 이견희처럼 부유한 시민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

기본소득의 담론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즉 시민이란 자격을 갖추면 모두에게 보편적·무조건적·개별적인 기본소득의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공적 자원들 가운데 일부를 전통적인 가장이나 가계의 몫이 아닌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다. 셋째로 기본소득은 개별 시민의 여타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워크페어의 요구 대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율적인 삶의 설계를 지원하려는 목표로 주어지는 생명지분권의 인정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운동은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가입된 가맹국들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준에 맞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생태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²³⁾ 아울러 기본소득의 다양한 실험들은 좋은 삶의 개발에 긍정적 역할수행을 입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23) 참고. Matthew C. Murray and Carole Pateman, *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 Palgrave Macmillan, 2012.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www.basicincome.org/bien/)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는 회원국가의 소식지(newsletter)와 저널(Basic Income Studies)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7월 2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13차 총회에서 17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받은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도 웹 사이트(BIKN, <http://basicincomekorea.org>)와 세미나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로 기여하고 있다.²⁴⁾

보편적 인권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및 존엄성의 보존이란 차원에서 그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이란 규범적 척도의 물결을 확대해 왔다.²⁵⁾ 우리 시대는 보편적 인권이 공권력의 부당한 억압이나 권력의 남용,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와 권리보호를 위한 최상의 지도원칙으로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²⁶⁾가 더욱 풍성하게 발휘되길 희망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기아, 학살, 고문, 빈곤, 질병 등에 방지된 동료인간의 최소한의 생명과 자유 및 존엄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지의 문제와 대면할 때, 우연성, 상대성, 조건성과 같은 맥락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비교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권의 옹호에 필요한 최소기준치(minimum threshold)의 합당한 접근방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²⁷⁾

24)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성과로 알려진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인도의 텔리 주와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현금지원 시범사업,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APF)과 배당금(PFD) 모델에 잠시 주목해 보자. 이러한 모델의 성과는 현금 기본소득이 각자 미래의 삶을 설계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촉진에도 기여하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경제적 시민권을 부여하며, 최저임금과 같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자존감과 공동체의 연대의식도 제공하는 해방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외,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2-15쪽, 82-86쪽. 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32-44쪽.

25) 이러한 이유로 롤즈(John Rawls)는 세계화 시대의 ‘만민법’으로서 인권의 구현은 “1) 한 사회의 정치제도와 법질서의 적정함(decency)에 대한 필수조건이며, 2) 정당화되고 강제적인 타 만민의 간섭, 가령 외교적, 경제적 제재나 중대한 경우에 군사력을 통한 간섭을 배제하는 충분조건이 되며, 3) 만민 간의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존 롤즈/장동진 외, 『만민법』, 134쪽.

26) 리세와 시킨크(Risse and Sikkink)는 긍정적인 부메랑이론의 모델로 다섯 단계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인권탄압의 단계이고, 2단계는 탄압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부인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외부적 압력에 대항하는 전술적 양보의 단계로 접어들며, 4단계는 인권 규범에 규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며, 5단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이 관행으로 굳고, 필요한 경우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집행되기도 한다.” 마이클 프리먼/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 182-183쪽.

27) 보르드-안데르스 안드레센(Bård-Anders Andreassen)과 그의 동료들은 영양 상태, 영유

만인에게 천부적이며 양도할 수 없고 침해될 수 없는 보편타당한 인권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지분권의 보장이어야 한다.²⁸⁾ 그런데 지금까지 인권담론은 통상적으로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나 외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권의 확보에만 주목하려는 경향이 우세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권담론은 급박한 사회권이나 개발권의 보장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주요 가치들인 자유, 평등, 연대의 개념마저 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라는 이념적 구분법에 따라 세분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산 혹은 퇴색되도록 만들어 왔다.²⁹⁾ 이러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사람들을 주변화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점과 관련해 냉전종식 이후에 등장한 인권담론은 전통적인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권리에 기초한 연대적인 인류애의 실현에 주목하려는 추세이다. 쉬피오(Alain Supiot)는 그 출발점으로 "개인들에게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보안책으로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제공할 것"³⁰⁾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만인은 인권의 진정한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 정의를 함께 누릴 수 있고, 이

아사망률, 질병빈도, 기대수명, 수입, 실업률, 식품섭취 등을 척도로 하는 최소기준치의 접근방식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UN이 사용하는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와도 비슷하다. 마이클 프리먼/김철효 옮김, 『인권 이론과 실천』, 219쪽.

28) 어떤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둔 좋은 삶의 공동체가 되려면 삶의 기초적인 필수품들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해야만 하고 누구나 동시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9) 이러한 점은 특히 인권담론에서 자유와 평등 가운데 어떤 개념을 우선적으로 내세울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결과물로 잘 알려진 국제인권규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 규약(ICCP 또는 B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 규약(ICESCR 또는 A규약)’ 혹은 유럽 인권규범의 ‘유럽인권협약(ECHR)’과 ‘유럽사회헌장(ESC)’의 분리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다.

30) 샌드라 프레드먼/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483쪽.

러한 가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공동체의 공적 삶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지구촌의 현주소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자리의 창출과 안정적 고용이 이전에 비해 더욱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품위 있는 인간적 삶의 전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식량, 의료, 주거, 교육,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한 기본적 욕구들에 대한 권리마저 배제당하고 있으며, 그 최저 수준을 보장받기 위한 대안모색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다수의 동료인간을 정상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³¹⁾ 만일 누군가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세기 인권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이념을 통해 20세기 후반까지 미국, 유럽, 북유럽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인권실현의 출발점인 생존권의 보장에 부분적으로 대응해 왔다. 에스핑 안데르센(Cospa Esping-Anderson)은 이러한 복지모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삼분해서 설명하고 있다.³²⁾

1)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모델. 이 모델은 국가의 간섭이 없어야 개인의 자율적인 자유가 성립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 모델의 특징으로는 첫째, 빈민들만 겨냥하여 자격 조건 심사에 따라 복지를 제공한다. 둘째, 대단히 협소한 범위의 위험만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간

31) 고대 아테네의 시민들은 BCE 461년 페리클레스의 제안으로 대중법정이나 의회에 참석할 경우 보수가 제공됨으로써 마침내 가난한 자들도 생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보수는 보통 2-3오블로 아테네인들의 하루 일당의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노동 계급 시민들이 정치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였다고 한다. 폴 우드러프/ 이윤철 옮김, 『최초의 민주주의 - 오래된 이상과 도전』, 96쪽.

32) G. Esping-Anderson, *Social Foundations of Post Industrial Economics*, 74-76쪽.

주되므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처럼 ‘건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위험 요인이 크게 상품화되어 있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복지제도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셋째, 이 모델은 복지권에만 권리가 국한되어 있고 사회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 및 고용 권리나 노동 시장의 규제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모델은 가계 조사에 의한 복지 수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개인이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지만, 복지 수혜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낮고 그 혜택이 사회적 평등을 신장하기 보다는 ‘인정상 불평등(recognition inequalities)’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복지 수급자에게 게으름뱅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게 되는 단점이 있다.

2) 가족을 중시하는 보수적 조합주의모델. 이 모델은 복지란 근면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기여도의 보상으로 간주한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보수적인 조합주의국가들에서 복지사업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별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수혜의 액수는 개인의 기여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가에 의존하므로, 그가 점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그 근거를 두게 된다.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의 가장이 노동이나 복지의 기여분에 따라서 부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에 기반을 둔 복지제도는 일부 계층을 위해 다른 계층이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고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퇴직, 감원, 질병, 산업 재해 등의 위험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평등주의적 모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처럼 유급 고용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려는 태도는 최근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및 시간제근무 직종 종사자들의 낮은 기여금이나 불규칙적인 최저임금 등을 감안할 때, 빈곤층 불평등의 제거보다는 정규직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정망과 강한 유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유럽 통합 이후 이 모델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3) 국가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모델. 이 모델은 적극적인 자유와 연대, 실질적 평등의 가치를 표출하는 복지의 이상에 가장 가깝고 복지 수혜자의 자격 심사를 대신하여 보건, 교육, 보육, 여가 등을 공공재로 보장하고 있다. 복지 사업은 국가에 의해 대부분 제공되며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수혜가 돌아간다. 직업 훈련, 의료 제도, 교통, 교육, 보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개방적 접근권은 집단적인 복지수혜로 간주되고 있으며 개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의 수급자 개념보다는 적극적인 권리의 개념이 우세하다. 이 모델은 누구나 장애, 퇴직, 질병, 양육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전체공동체가 이러한 부담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에 기반을 둔 예들이다.

그런데 에스핑-안데르손이 제시한 기존의 3가지 복지모델로는 보편적 인권의 실현에 요구되는 생명지분권의 보장문제를 원활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이래로 최근 복지선진국들마저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정조정, 해체 및 기존의 복지혜택마저 축소하는 정책으로 고민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모두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 어렵다면, 이제 최소한 비정규직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생존보장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가운데 한 가지로 기존 복지모델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의 추가적 도입으로 생존지분권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상보적 유형의 사회복지국가(social state)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정치·경제·법·사회·문화 분야의 시스템과 사회질

서에 대규모 변화가 유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가 요구된다. 최근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흥미롭게 추진 중인 나라가 있다. 2016년 가을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의 도입여부가 국민투표로 치러질 예정인 스위스가 제안하고 있는 보장적 기본소득이 바로 그것인데, 이 보장적 기본소득 모델의 절차적 합의과정은 앞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보편적 복지모델을 채택하려는 스위스의 실험적 프로젝트는 인권과 기본소득의 만남에 새로운 이정표의 일보로 기록될 것이다.

〈네 가지 복지체제의 유형들〉

	복지체제 유형			
	자유주의 모델	사회민주주의 모델	보수주의 모델	보장적 기본소득 모델
민영화	높음	낮은 중간	낮은 중간	중간
재분배능력	약함	강함	약함	중간
완전고용보장	약함	강함	중간	중간
시장의 역할	중심적임	주변적임	주변적임	중간
국가의 역할	주변적	중심적	부차적	부차적
가족/공동체의 역할	주변적	주변적	중심적	중간
인권의 역할	중간-높음	중간	주변적	중심적
지배적 사회지도원리	시장	국가	도덕	윤리와 법
복지국가 연대의 지배적 유형	개인주의적	노동중심적	공동체주의적-국가주의적	보편주의적
실제 사례들	미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4. 신자유주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한국의 기본소득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경제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금융자본주의의 무한경쟁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피해는 무엇보다도 실업사회와 비정규직의 대량생산을 통한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에 다름 아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2010년 점유운동, 그리고 최근 유럽 경제위기를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더 이상 현 체제로는 점증하는 일자리 감소와 글로벌 양극화 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바람직한 세계체제개편이나 부의 분배문제를 상세히 다룰 수는 없다.³³⁾ 하지만 신자유주의체제의 제도적 개선과 불평등한 소득 및 부의 바람직한 분배방안을 모색하려는 다각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자.

반면,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보다는 오히려 공고화가 진행 중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더 많은 용자 빚으로 주택을 마련하라고 장려하고 있는 지경이다. 경제성장과 무관한 복지재정의 결핍과 연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민연금도 예상보다 빠른 재정위기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으며, 4대 보험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노후의 불안감과 '7포 세대'나 'N포 세대'로 내몰린 청년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³⁴⁾ 주택가격도 너무 급등해서 부모나 친지의 도움 없이 정상 소득만으로 내 집 장만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잦은 이사를 감수해야하는

33) 세계화 국제포럼 지음/이주명 옮김,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119-151쪽.

34)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을 포기해서 '5포세대'라고 불렀던 청년들이 최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세대'로 전락했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로 비하되고 있는 지경이다.

비자발적 인구이동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의 간극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양극화도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혼율과 범죄율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과 80%에 이르는 최고대학진학률이란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조기 유학 및 교육이민, 사교육 시장의 만연 때문에 삶의 전망과 기대감에서 불확실성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연이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마저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불신과 냉소로 깊어지고 있고,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투표율의 하락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공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과 언론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마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개인들의 삶의 전망 역시 자살률이 보여주는 것처럼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노동과 복지 영역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노동시장은 현 추세대로라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이며, 고용구조도 비자발적 실업과 비정규직의 과잉으로 임금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부문의 자동화, 합리화, 정보화의 물결은 노동 종말의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리프킨(Jeremy Rifkin)의 언급처럼, “21세기까지는 지적 기술이 상업적 영역의 인간 노동을 많이 대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은 문화적 영역에 속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결국 노동은 기계가 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결과 단지 효용생산에만 관계하게 될 것이다. 반면, 사람은 노동 속에서 내재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된 사회공동체 의식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해방되어야 한다. 사람은 노동의 소외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다가오는 세기에 인류를 위한 위대한 도약을 꿈꾸고 있는 시민 사회에서 사회적 자산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궁극적인 인간에로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력³⁵⁾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가족, 산업, 교육, 주거, 보건의료, 복지, 환경, 생태계 등과 관련된 평범한 한국인의 삶의 전망은 어떠한가? ‘동반성장’과 ‘창조경제’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부문별 고용구조, 그리고 소득 양극화는 더한층 공고화되고 있고 현재의 시혜적 복지정책의 모델로는 양극화된 불평등의 여하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드러내는 생산물, 작업과정, 동료애, 그리고 인간관계의 전체 영역에서 드러나는 소외된 삶은 한 축에서 자동화, 복합적인 분업체계, 엄청나게 증대된 경쟁업무들 간에 수행되는 초국가적 팽창주의로 인한 부의 축적으로, 다른 한 축은 고용불안정과 “프레카리아트(precariat)”³⁶⁾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는 여러 직업 유형의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심적 변화를 체험시키고 있다.³⁷⁾ 무엇보다도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준비에 따른 고통이나 중장년층의 급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의 여파는,

35) 제러미 리프킨/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45쪽.

36) Guy Standing, The Precariat, 7-13쪽. 프레카리아트(precariat)란 불안정(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로 비정규직(임시직, 계약직, 파트타임), 실업자, 노숙자를 포함한 불안정한 이중고용시스템(two-tier system of employment)의 고용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참고. 지그문트 바우만/안규남 옮김,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21쪽.

37)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2013년 통계청 추산으로 46.1%에 이른다. 이 수치도 사내 하도급 직원이 정규직으로 분류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9.7%(월임금총액기준)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수치는 심지어 전년도에 비해 0.2% 떨어진 결과다. 이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http://kostat.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 3).

다소 편차가 있지만, 흔히 충격과 기약 없는 기대감 사이에서 진행되는 우울한 시소게임일 뿐이다.

결국 ‘선 성장, 후 분배’라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용과 이로 인한 임시직 고용구조의 증가추세는 절대 다수의 프레카리아트화(precariatization)의 강화이자 부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귀결될 뿐이다. 심지어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와 분배시스템의 취약성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기반으로 삼는 워크페어(workfare)와 연계된 잔여적·선별적 복지시스템의 채택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워크페어 시스템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의 숫자마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전략으로는 모두의 생명지분권과 인권보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보다 큰 호혜성의 틀에서 우리사회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가게 될 다수에게 무언가 다른 소득원천으로 부족한 소득 분을 메울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와 정책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더구나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개방화의 추세로 더욱 수적 증대가 예상되는 사회적 배제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 안정망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현 한국사회에 결여된 기본적 삶의 전망에 대한 대안이자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행전략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5. 기본소득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기본소득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논쟁점들은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³⁸⁾, “그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절차

방식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과 관련되고 있다.”³⁹⁾ 특히 기본소득의 제도적 도입의 주된 쟁점은 재원마련 방안의 문제이다. 소위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이 제시하는 재원마련의 대안은 크게 슈퍼리치들의 상속재산, 금융소득 및 부동산과 관련된 불로소득에 대해 강한 누진적 소득세나 부유세 및 상속세를 지속가능한 성장에 맞게 도입하며,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세금구멍의 보완, 불필요한 정부지출이나 과도한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방안 및 환경세나 생태세의 도입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⁴⁰⁾ 이러한 대안 모색의 대부분은 각

38) 이 논의는 각 나라별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 되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액수는 별로 중요한 핵심이 아닐 수 있다. 인도의 시범사례에서처럼 적은 액수(매달 성인 300루피, 아동 150루피)로도 삶의 전망과 기대치의 변혁과 해방의 잠재력이 파격적일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성남시가 월 10만원의 청년배당의 지급을 제안하는 가운데 지역화폐, 지역경제의 활성화, 청년세대의 문화활동과 지역 연대등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파급 효과의 산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킹외,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179-188쪽.

39)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도입과 추진을 둘러싸고 어떠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자!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은 왜 신체가 튼튼한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군가가 그/그녀를 위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의 논변이 필요하다. 아울러 빈곤과 노동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변화도 각 국가의 맥락에 따라 구분해서 논해야 한다. 더불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로 아래와 같은 점들이 일반적으로 제기 된다. 1) 기본소득은 기생적 삶을 부추긴다. 2) 기본소득은 성별 분업을 종식하지 못할 것이다. 3)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몇몇 힘든 일자리는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빈국 출신의 낮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다. 4) 기본소득은 노동 인구의 이중화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5) 기본소득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6) 기본소득은 노동 윤리를 파괴할 것이다. 7)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야기된 부당함을 종식하는 수단으로서 부적합하다. 8)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9) 기본소득은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10) 기본소득의 지급액이 매우 적으면 기대한 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11) 기본소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40) 일반적으로 연금, 사회보조, 주거보조비, 자녀 양육비, 교육보조금 등 현금 지급형 사회복지제도의 통폐합을 통한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나 증권거래세나 토지세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또는 환경세와 같은 특수세의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기본소득설계모델로는 강남훈 외,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65-77쪽. 강남훈, “2012년 기준

해당 분야의 기득권층 혹은 집행기관이나 해당 영역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보는 수혜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게 됨으로써 정치적 대항이나 힘겨루기의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명지분권과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현실적으로 3D직종이나 생명에 위협적임에도 기계화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고위험 군에 속하는 직종들은 지원자의 부족으로 상대적 고임금이 지불되는 가치 있는 노동으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액수는 초창기에는 생계 만족에 필요한 최소 금액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밖에 개인적 필요나 여타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동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본소득옹호자들은 소위 ‘부분적 기본소득’의 옹호자로 일정 시기까지는 불려야 한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그 지불 액수는 도입의 초기 단계에는 노동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종자돈의 규모로써 개인 삶의 설계에 필요한 '소득보존프로그램 (income-support program)'의 일종이자 건강한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일단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이나 현물이 매달 규칙적으로 나의 계좌에 들어온다면,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생계형 업무에만 종사하던 기존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합리적 선호에 따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자 최소한의 계획적인 삶의 전망도 가능하게 되며,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나 부당한 열정 페이의 강요에도 어느 정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일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개혁”, 280-325쪽.

자리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개인적 자존감의 역량도 키우고 평등하고 연대적인 인간관계의 성립과 최소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야말로 최소한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소득장려세제처럼 근로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선별복지의 예산 낭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아울러 보편적 기본소득의 수급자는 선별복지의 경우처럼 수급자격의 입증과정에서 겪게 될 개인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와의 연대적 소속감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범죄율이나 자살률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결론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세습주의의 악습을 타파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 만인의 기본적인 삶의 전망이 보장되는 공정한 협력의 신뢰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명지분권을 토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적 업무에 대한 참여와 민주적인 합의절차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능력주의, 성과주의, 결실주의로 대변되는 ‘배제와 독식의 문화’로는 보편적 인권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현 추세를 방치하면 과거 극도로 불평등했던 1910년 이전과 유사하거나 더 극심한 “불평등의 신세계가 도래”⁴¹⁾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미래의 예측에서 벗어나려면, 인류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연대적 인권공동체의 실현 방안을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된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각 개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고, 실행하는 자율성의 조건에 다가감으로써 자기 해방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친족, 동료들과의 우정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의 내방을 통한 시민들과의 연대적 삶도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의 도입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그 도입의 절차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지루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편적이며 무조건적인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지구촌 국가들 간의 격차수준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 형성과정에서 지방, 국가, 지역의 차원에서 다양한 의제, 실험 및 검증태도의 개방성이 적합해 보인다. 물론 장기적 목표로 기본소득의 권리는 지구인의 생명지분권을 보장하는 확장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보조성의 원칙"⁴²⁾을 준수하고 개인의 자

41) 피케티가 이용한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전체 부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 40%를 제외한 하위 50%는 고작 5%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토마 피케티/ 장경덕 외 옮김, 『21세기 자본』, 309-319쪽.

42) 용어 '보조성(Subsidiarität)'은 예비, 도움, 지원, 보호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subsidium'에서 파생했다. 이 용어는 가톨릭 사회교리(Karholische Soziallehre)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까지는 개념사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만 '보호'라는 개념은 유기체적(목적론적) 국가관이 자리했던 시기에 국가가 개인 선의 실현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원조의 의미였다면, 원자론적 국가관이 우세한 시기에는 국가가 개인 선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불간섭의 의미로 작동하였다. 이처럼 보호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한 보조성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같은 상위의 정치단위의 활동은 그 본질에 따라 개인과 같은 소규모 하위 단위의 활동을 자율적일 수 있게 지지하되 상위단위의 국가 활동은 하위단위인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해서만 활동을 허용된다.

기해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권, 좋은 삶, 지구촌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연대공동체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미래가 지금처럼 단지 실질적 삶의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문서화된 선언일 뿐이라면, 누구도 삶의 전망과 기대의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하지만 인류가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초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같은 합당한 대안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동참한다면, 인류는 희망을 비추는 삶의 전망을 갖고 함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몽상적 이상주의자가 아닌 깨어 있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생명지분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연대적인 시민, NGO들, 그리고 정부와 초국적 기구들 각각의 역량이 결집되고 발휘되는 연대적인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물론 그 추구하는 목표는 다름 아닌 ‘기본소득의 도입, 인권과 인간 존엄성 실현의 진일보!’이다.

(2015년 10월 2일 접수, 10월 28일 심사완료, 11월 12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유엔밀레니움프로젝트 www.unmilleniumproject.org
유엔 <http://www.un.org/en/documents/udh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3) <http://kostat.go.kr/>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www.basicincome.org/bie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http://basicincomekorea.org>)
강남훈 외. 2009.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서울: 민주노총.
강남훈. 2014. “2012년 기준 기본소득 모델들과 조세개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획.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고양: 박종철출판사, 280-325.
기든스, 앤서니/한상진·박찬욱 옮김. 2001.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010.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Basic Income for All!』,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2010. 1. 27(인쇄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외. 2015.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2015. 6. 19-20(인쇄물).
김비환 외. 2010.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서울: 이학사.
롤즈, 존/장동진 외 옮김. 2009. 『만민법』, 서울: 아카넷.
리프킨, 제러미/이영호 옮김. 1996.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바우만, 지그문트/안규남 옮김. 2013.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파주: 동녘.
박병도. 2006. "연대의 권리, 제3세대인권", 인권법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서울: 아카넷.
박찬운. 2011. 『인권법』, 서울: 한울.
세계화 국제포럼 지음/이주명 옮김. 2005.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서울: 필맥.
아렌트, 한나/이진우·박미애 옮김.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파주: 한길사.
안옥선. 2008. 『불교와 인권』, 서울: 불교시대사.
액커만, 브루스 외/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2010.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서울: 나눔의집.

- 우드러프, 폴/이윤철 옮김. 2012. 『최초의 민주주의 - 오래된 이상과 도전』, 파주: 돌베개.
- 임경석. 2013.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 대동철학회, 『대동철학』제65집, 51-73.
- 임경석. 2014. “인권 실현의 토대로서의 글로벌 기본소득에 대한 단상”,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서울: 박종철출판사, 94-120쪽.
- 임홍빈. 2003,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가치론』, 서울: 아연출판부.
- 지글러, 장/유영미 옮김.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 최광은. 2010.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서울: 박종철출판사.
- 최현. 2008. 『인권』, 서울: 책세상.
- 클레팸, 앤드류/박용현 옮김. 2010. 『인권은 정치적이다; 쟁점으로 보는 인권교과서』, 서울: 한겨레출판.
- 프리먼, 마이클/김철효 옮김. 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서울: 아르케.
- 피케티, 토마/장경덕 외 옮김. 2014. 『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 Donnelly, J.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on, Gøsta. 1998. *Social Foundations of Post 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an, 1994. *Human Rights in Another Key*, Cambridge: Polity Press.
- Griffin, James. 2008. *On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rray C. Matthew/Pateman Carole(Edited.). 2012. *Basic Income Worldwide: Horizons of Refor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Nussbaum, M. C. 1993. "Commentary on Onora O'Neill: justice, gender, and international boundaries", in: M. Nussbaum and A. Sen(eds.),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324-335.
- Pogge, Thomas. 1998. "Eine globale Rohstoffdividende", in: Christine Chwaszcza und Wolfgang Kersting(Hrsg.), *Politische Philosophi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325-362.

Shue, Henry. 1980.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 S. Foreign Poli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anding, Guy.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Basic Income necessary to realize human rights

Lim, Kyung Seok

This paper is noted that the enhanced reason for the uselessness of human rights is based neoliberalism. Because neoliberalism came to suppression of the right to life-share as the starting point of human rights. However, Chapter 2 proposes the need for any substantial human rights discours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y looking at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significances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fter the modern age. In Chapter 3, I'll look at the complementary merits to provide the meeting between the unconditional, universal basic income and human rights. Chapter 4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our society's dismal labor market created by neoliberalism. Then Chapter 5 summarizes the features, benefits, and issues of basic income. Finally, the practical solidarity of the social-political movement for the introduction of a basic income should emphasize that the active step in the posit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Key Words: Basic Income, Human Rights, Solidarity, Right to Life-Share, Precariat